



## 모로코 국적법의 개관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팀

### I. 머리말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중의 하나로서 국왕이 행정, 사법, 입법 등 3권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대의정치 시행을 통해 점진적인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나라이다.

1956년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듬해 절대적 지배자인 술탄은 그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고, 1957년 ‘왕’이라는 호칭을 채택하였는 바, 모하메드 5세(Mohammed V)라 칭하여졌다.

1961년 왕이 사망하자 하산 2세(Hassan II)가 뒤를 이었으며 1962년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 하산 2세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이 모하메드 6세(Mohammed VI)로 즉위하고 부왕의 입헌군주정을 물려받았다. 그의 통치하에서 모로코 헌법은 공화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민주적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보유하는 공식적인 국가 수반으로서의 왕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수상을 지명하고 장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바, 이것이 실질적인 내각이다.

그에 비해 의회는 1996년 헌법개정으로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회는 형법, 민법, 상법에 한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왕령(Dahir)을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모로코의 의회는 왕령에 따라 해산될 수 있으며, 실제로 몇 번 해산된 사실도 있다.<sup>1)</sup>



1) 모로코 국가개요에 대해서는 두산백과사전(엔사이버 백과사전) 참조(<http://www.encyber.com>).

## II. 모로코의 국적법

국적이란 일정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서 국적문제는 각국의 전통·경제·인구정책·국방정책 등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국제법상의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나라 국내의 관할사항으로 되어 있다. 일정한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의 영토 밖에서도 그 나라의 주권에 복종하는 반면에 국적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근대 이전에는 국적취득이나 변경, 이탈 등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 1. 모로코 국적법의 연혁

모로코 국적법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2년 후인 1958년 9월 6일(공보 제2394호)에 공포되었다.<sup>2)</sup> 1958년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만을 인정하고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로만 모계혈통주의를 인정하고 있었다.

- 모로코인 모와 알려지지 않은 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 Dahir n° 1.58.250 du 6 septembre 1958 relatif au code de la nationalité marocaine.

3) *L'inter*, "Le Roi fait adopter un nouveau code de la nationalité", 2007. 1. 20.([http://www.linter-ci.com/article.php?id\\_article=3899](http://www.linter-ci.com/article.php?id_article=3899)); *L'Economiste*, "Parlement: Le code de la nationalité adopté en commission", 2007. 2. 21. 참조.

4) 이와 같은 개정의 목적은 모로코 가족법(소위 Mudawana)의 개정에서도 두드러졌으며, 이는 모로코의 최근 인권개혁에 따른 것이었다. CODE DE LA FAMILLE, Dahir N° 1-04-22 du 12 Hija 1424; Bulletin Officiel n° 5358 du 2 ramadan 1426(6 octobre 2005), p.667 참조.

5)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여야 할 법의 충돌과 저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또는 섭외사법을 마련하게 되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법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1963년 '복수국적의 제한과 복수국적의 경우 병역의무에 관한 협약'(1963 'Convention on reduction of cases of

- 모로코인 모와 무국적 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모로코에서 태어난 자녀
- 모로코인 모와 외국인 부 - 법무부에 의한 반대가 없을 것과 그 자녀가 국적선택 의사표시 연령의 도래에 앞서 2년동안 지속적으로 국적 취득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 예게서 태어난 자녀로 모로코에서 출생한 자녀

그러나 2005년 7월, 모하메드 6세는 그의 국왕 즉위 6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모로코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모로코 국적취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국적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sup>3)</sup>

2005년의 개정 국적법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로코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모로코 국적을 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의 목적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sup>4)</sup>

### 2. 모로코 국적법의 내용

모로코에서의 국적은 부모친자관계(혈통주의; 속인주의) 또는 모로코 출생(출생지주의; 속지주의)에 의하여 정해진다.<sup>5)</sup>



### (1) 친자관계에 의한 국적의 취득

모로코는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모로코 국적법 제6조는 “모로코인 부에게서 출생한 자녀 또는 모로코인 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모로코 국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법률의 효력에 의한 국적의 취득

모로코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모로코에서 출생한 자는 모로코에서의 일정한 주거를 신고하는 때에 모로코 국적을 취득한다(제7조).

개정 국적법의 시행 이후 외국인 부모로부터 모로코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로코시민이다(제9조). 법률의 효력에 의해 모로코 국적을 취득한 자는 친자관계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모로코인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국적법은 귀화와 관련하여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적용된다.

국적취득 신청은 법무부, 내무부 및 외무부 위원회 및 왕실에서 심사한다.

### (3) 이중국적

모로코 국적자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즉, 이중국적자라고 하여 모로코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이

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 Ⅲ. 국적법의 구성

모로코의 국적법은 다음과 같이 총7장, 4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6)</sup>

### 1. 제1장 : 일반조항

- 제1조(국적의 관한 법원)
- 제2조(국적관련 조항의 시간적 적용)
- 제3조(국적과 가족법)
- 제4조(성인의 연령)
- 제5조(“모로코에서”의 정의)

### 2. 제2장 : 원시적 국적취득

- 제6조(친자관계 또는 부자관계에 의한 국적)
- 제7조(모로코에서의 출생에 의한 국적)
- 제8조(공통규정)



multiple nationality and military obligations in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과 단일국적주의 천명하지 않고, 복수국적자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중국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1997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등이 그러하다.

6) Loi n°62-06 publiée au B.O. n°5513 du 2 avril 2007,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ahir n°1.58.250 du 6 septembre 1958 relatif au code de la nationalité marocaine.; <http://ejustice.justice.gov.ma> 참조.

### 3. 제3장 : 모로코국적의 취득

#### 제1절: 법률에 의한 취득

제9조 1. 모로코 출생 및 거주에 의한 모로코 국적의 취득

2. 양자결연(Kafala)<sup>7)</sup>에 의한 모로코 국적의 취득

제10조(혼인에 의한 모로코 국적의 취득)

#### 제2절: 귀화

제11조(귀화의 조건)

제12조(예외)

제13조(귀화행위)

제14조(귀화행위의 철회)

#### 제3절: 국적회복

제15조(국적회복)

#### 제4절: 취득의 효력

제16조(개인적 효력)

제17조(귀화에 따른 자격박탈)

제18조(단체효력)

### 4. 제4장 국적의 상실 및 권리의 박탈

#### 제1절: 상실

제19조(상실의 경우)

제20조(상실의 효력일자)

제21조(상실의 단체효력)

#### 제2절: 권리의 박탈

제22조(권리박탈의 경우)

제23조(권리박탈의 절차)

제24조(권리박탈의 단체효력)

### 5. 제5장 : 행정절차

제25조(신청서 및 신고서 제출)

제26조(불수리, 거부 및 이의신청)

제27조(심사 및 신고기간)

제28조(신고의 효력의 부인)

제29조(고시)

### 6. 제6장 : 증명 및 사법절차

#### 제1절: 증명

제30조(증명책임)

제31조(원시적 국적의 증명)

제32조(취득국적의 증명)

제33조(국적증명서)

제34조(상실 및 권리의 박탈 증명)

제35조(재판증거)

#### 제2절: 쟁송

제36조(권한)

제37조(선결 특례)



7) Kafala는 원래가족 구성원으로써의 자격은 유지하는 양자결연의 형식을 칭하는 아랍어이다.



- 제38조(영토관할)
- 제39조(주된 행위)
- 제40조(이송행위)
- 제41조(부대행위)
- 제42조(절차)
- 제43조(기관력)

### 7. 제7장 : 임시·예외규정 및 적용규정(조항들)

- 제44조(임시조치)
- 제45조(예외적 규정)
- 제46조(발효일)

## IV. 맺음말

모로코는 2005년 개정 국적법을 통하여 같은 해 개정된 가족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는 국민으로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실제 국적법이 제정된 1958년부터 개정된 2005년 사이에 국적법상 절차를 통하여 1,646명이 모로코 국적을 취득하였다.

모로코는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의 과감한 개혁조치를 추진하고<sup>8)</sup> 현대적인 법체

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적과 관련하여서도 그 취득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모로코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모로코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국의 고급 두뇌를 유치하고자 이중국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적법 개정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경과 국적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세계화 시대에 단일국적주의에 대한 재고가 이중국적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국민으로의 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였던 모로코의 사례가 우리의 국적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외국법제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송 영 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8) *Tribune des droits humains*, “Réforme du code de la nationalité au Maroc”, 2007. 4. 10.; <http://www.humanrights-geneva.info/Reforme-du-code-de-la-nationalite,1480>